

# 사슴수입 6년을 결산한다

## 1만4천여두 수입에 약 150억원 지출

지난 91년 사슴수입개방 발표이후 92년부터 97년까지 6년동안 국내에 수입된 사슴수는 얼마나 되며 외화는 얼마나 유출되었는가.

주로 수입된 사슴품종은 무엇이며 수입에 가장 많이 가담한 인물은 누구인가.

정부는 과연 사슴수입을 부추기지 않았으며 양록인들 역시 이율배반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 그 면면을 살펴본다.

### 사슴수입 동향

지금까지 국내에 수입된 사슴수는 정확히 1만4천6백92두에 1천6백64만8천4백72달러(약 1백50억)의 외화를 소비했다. 총 수입두수중 1천4백10두(9.6%)가 폐사하고 1만3천2백82두(90.4%)가 출고되었다.<표 1, 2참조>.

수입된 사슴품종은 엘크가 1천5백91두(10.8%), 레드디어가 1만3천95두(89.1%),

기타 6두(0.04%)로 단연 레드디어가 가장 많은 두수를 차지했다.

수입국 별로는 호주에서 레드디어가 1만2천3백52두가 수입되어 1천70만5천8백49달러를 지출했으며, 카나다에서 엘크 9백35두 수입에 3백55만7천4백26달러를, 미국에서 엘크 5백94두와 기타 6두를 수입하는데 1백86만8천4백6달러를, 뉴질랜드에서 레드디어 8백5두를 수입 51만6천7백91달러에 이르는 외화를 유출했다.

국내 최대 사슴수출국은 호주로 사슴수입개방이후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들어온 요주의 대상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카나다 뉴질랜드 미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개방이후 뉴질랜드에서는 단 한차례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사슴수입의 위생조건을 비교적 잘 지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1> 수입개방이후 사슴 수입실적 총괄표(92~97년)

수 입 국	품 종			수입두수	폐사수	출고수	수입가격 (US\$)	비 고
	엘 크	레드디어	기 타					
미 국	594	—	6	600	95	505	1,868,406	레인디어(4), 액시스(1), 삼바(1)
카 나 다	935	—	—	935	22	913	3,557,426	
호 주	62	12,290	—	12,352	1,114	11,238	10,705,849	레드디어만 폐사
뉴질랜드	—	805	—	805	179	626	516,791	
계	1,591	13,095	6	14,692	1,410	13,282	16,648,472	

### 사슴수입 폐단

국내 양록업은 한마디로 안팎 곱사등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밖으로는 수입사슴과 수입녹용이 계속해서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안으로는 이들 수입사슴과 수입녹용의 폐단으로 정작 국내에서 생산된 녹용은 제대로 판매되지 않아 농가의 시름을 더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표2> 수입개방이후 연도별 시승 수입실적

(단위 : 두/US\$)

수입시기	품명	수 입 두 수				총수입 두 수	폐사수	출고수	수입가 (US\$)	실수입자	
		미 국	캐나다	호 주	뉴질랜드						
92.6. 4	엘크	170				170	2	168	643,200	강성구	
9.29	레드			902		902	2	900	716,631	김병천	
9.30	엘크	145				145	64	81	507,000	양록조합	
10.24	레드			862		862	176	686	633,570	한국시승	
계		315		1,764		2,079	244	1,835	2,500,401		
93.2. 9	레드					805	805	626	516,791	전병소	
3. 9	엘크	44					44	6	38	34,178	홍대은
3.24	엘크		119				119	4	115	633,417	성유석
5.18	레드			817		817	24	793	790,000	인종순	
7.27	레드			504		504	15	489	378,000	심민섭	
9.25	레드			811		811	0	811	640,000	김남득, 지인길	
계		44	119	2,132	805	3,100	228	2,872	2,992,386		
94.1.22	엘크	55				55	5	50	110,000	조관현	
2.22	레드			543		543	68	475	417,000	이창노	
3. 1	엘크		99				99	0	99	434,800	강성구
3.29	레드			739		739	9	730	488,757	김남득, 지인길	
5.29	엘크		192				192	10	182	526,250	김종성 (성유석)
8. 2	레드			791		791	317	474	554,830	박종반	
10. 2	레드			549		549	13	536	427,715	임광정	
12. 2	엘크		214				214	0	214	540,700	신동각
계		55	505	2,622		3,182	422	2,760	3,500,052		
95.3. 3	엘크		162			162	7	155	383,509	서창근	
4.21	엘크	2					2	0	2	4,980	서울대공원
5.21	레드			676		676	8	668	550,000	두아인터내셔널	
계		2	162	676		840	15	825	938,489		
96.2. 6	레드			534		534	205	329	364,000	가교무역	
2.17	래피더	4					4	0	4	36,800	서울대공원
4. 2	레드			659		659	38	621	610,000	두아인터내셔널	
4.10	레드			186		186	2	184	130,200	카마	
6.22	레드			752		752	7	745	617,300	다인축산	
9. 7	엘크	28					28	0	28	112,448	세호KJ
10.30	레드			509		509	61	448	613,910	유니온상사	
계		32		2,640		2,672	313	2,359	2,484,658		
97.1.22	엘크	150				150	18	132	405,900	대경무역	
3. 9	엘크		144			144	0	144	1,026,250	청천농장	
3.26	레드			648		648	22	626	529,600	다인실업	
4. 7	엘크		5				5	1	4	12,500	남상염
5.20	레드			507		507	8	499	405,600	류정숙	
7.31	레드			494		494	35	459	596,000	노원영	
8.27	레드			216		216	1	153	607,736	정원일, 신동천	
				(엘크62)				62			
9.22	액시스	1					1	0	1	3,000	서울대공원
10.21	레드			549		549	103	446	555,000	지인길	
11.13	레드			104		104	0	104	80,000	위영철	
12.12	심바	1					1	0	1	10,900	서울대공원
계		152	149	2,518		2,819	188	2,631	4,232,486		
누 계		600	935	12,352	805	14,692	1,410	13,282	16,648,472		

뉴질랜드의 경우 생사슴 수출은 지난 93년 2월에 단 한차례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국내 전체 수입녹용의 약 60%를 차지하는 녹용수출 대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호주는 가장 많은 사슴(레드디어)을 우리나라에 수출했으나 품종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관계로 농가에서 중탕용으로 처리하여 번식기반이 미약한 실정에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 호주에서 생녹용 수입이 늘어나고 있어 주목할 부분이 아닐수 없다.

호주에서 사슴을 기르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국내 사슴 수입업자들의 대부분이 종록개량 차원에서 우수한 사슴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값싼 사슴만을 수집해 달라고 한다』며 매우 의아해 하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를 파악해 볼때 호주에서 들어오는 사슴(레드디어)은 대부분 저질 사슴으로 아까운 외화만을 낭비하고 있는 꼴이다.

엘크는 카나다와 미국에서 주로 국내에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기르는 사슴중 비교적 우수하다고 판명된 자록의 경우 1만달러(약 1천만원)를 넘고 있으며, 종록은 부르는게 값이라고 한다. 오히려 카나다와 미국의 사슴값이 국내보다 웃들고 있어 IMF 관리체제 하에서 수입업자들의 사슴수입이 보다 신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상습 수입업자 발 불일곳 없애야

지금까지 국내에 사슴을 상습적으로 들어온 수입업자는 대략 5명 이내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지인길씨로 경기도 남양주에서 「밸엘사슴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호주에서 레드디어를 수입, 그동안 상당한 재미를 보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 교회 장로인 지인길씨는 오는 4월 25일에도 호주에서 레드디어 9백 50두를 수입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길씨 외에도 사슴수입에 자주 가담하는 인물로 가교무역 김남득씨, 상일동물원 신동천씨, 다인실업 최완근씨, 카나다에 이민가 있는 성유석씨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슴수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슴수입으로 그동안 실리를 챙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슴수입을 상습적으로 하다보니 어느정도 이력이 붙었고

판매에 자신이 생겨 기회만 있으면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양록농가들이다. 곁으로는『수입사슴이 국내 양록업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항변하면서도, 뒤로는『나하나 쯤이야』하며 수입사슴을 입식시키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사슴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사슴수입업자들이 발 불이지 못하도록 양록농가 스스로 수입사슴을 불매하는 일일 것이다.

지난 1월 22일 직간접적으로 그동안 수입사슴 거래에 가담해 왔던 국내사슴 유통인들의 모임체인 한국양록유통연합회(회장 송정호)에서 올해부터 수입사슴 유통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표방,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입사슴을 국립동물검역소 계류장에서 농가로 전문 운반하는 책임자들도 침석한 이날 행사에서 이들의 의지에 찬 결의에 기대를 걸며, 양록농가들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사슴수입 편법 조장 거들여

협회에서 누누히 농림부 산하 국립동물검역소에 사슴의 수입위생 조건 확인절차 강화와 검역을 철저히 준수해 줄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국립동물검역소는 우리 양록농가들의 절박한 기대와는 달리 「사슴」만 특별히 예외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협회에서 지난해 11월 29일 수입사슴 검역과 관련한 건의서(한국양록, 98년 1·2월호 36쪽 정책건의④ 참조)에 대해 국립동물검역소는 최근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내왔다.

## 수입사슴 검역관련 건의회신

### 1. 수입위생조건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보완요구 및 계류장 사용순위 지정

<건의요지>

○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한 사슴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동물 검역계류장 사용계획서의 구비서류에『수출국 농장 소재지 행정당국에서 수출위생 조건을 확인한 매매계약서』 제출요건을 보완요청

○ 검역계류장 사용은 사슴수입 위생조건에 합당한 수입물량을 확보한 자가 제출한 수입계획서 접수 순으로 검역당국의 사실확인후 지정

### <회신내용>

○ 사슴수입위생조건은 우리나라로 사슴 수출시 상대국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가간의 검역협정으로

- 수출국에 수입위생조건 준수의무 부여 이외에 동 조건준수의 별도확인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 조치로 검역으로 인한 무역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SPS)』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불가하며,

○ 동물검역소에서 수입되지도 않은 동물에 대하여 수입위생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접수순으로 우선 순위를 지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검역기간 개선

### <견의요지>

○ 수입사슴의 검역기간은 병균의 양성, 음성 또는 의양성의 검사기간과 계류장 소독 및 청소기간 등을 고려할 때 1회 검역기간을 최소한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

### <회신내용>

○ 사슴의 수입검역기간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규칙 제18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15일로 정하여져 있으며.

○ 사슴검역계류장 사용지정시 1회 사용기간을 하절기(5월~10월)의 경우 45일, 동절기(11월~익년도 4월)의 경우 1월 간격으로 운용하는 것은 검역계류장에 동물을 수용하여 검역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를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현재의 사용기간은 무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 3. 「축사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계획서 제출에 대한 조정」의 관련규정 삭제

### <견의요지>

○ 사슴검역계류장 사용을 접수순으로 지정하므로 수입동물검역계류장 사용계획서 제출요령 제5조(축사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계획서 제출에 대한 조정)의 규정을 삭제 요청

### <회신내용>

○ 수입동물검역계류장 사용계획서 제출요령 제5조(축사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계획서 제출에 대한 조정)의 규정은 사슴뿐만 아니라 소, 말, 돼지 등 검역계류장 사용계획서 제출대상 모든 동물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삭제 수용은 불가합니다.

## 4. 「지정받지 않고 수입된 동물의 조치」 관련규정 단서조항 삭제

### <견의요지>

○ 수입동물검역계류장 사용계획서 제출요령 제7조(지정받지 않고 수입된 동물의 조치)의 단서조항을 고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계류장 사용질서를 문란시키므로 동 단서조항 삭제 요청

### <회신내용>

○ 수입동물검역계류장 사용계획서 제7조(지정받지 않고 수입된 동물의 조치)의 단서규정은 축사등 검역계류장에 동물을 수용하여 검역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사슴뿐만 아니라 소, 말, 돼지등 검역계류장 사용계획서 제출 대상 모든 동물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으로 삭제 수용은 불가합니다.

이러한 국립동물검역소의 회신 내용을 백번 수용한다 하더라도 엄연히 사슴수입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슴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검역 계류장 사용을 지정받아야 하는데 실수입자가 아닌 제3자가 지정받는 경우가 있어 왔다. 추첨 방식을 통해 지정하다보니 사슴수입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당첨되어 실수입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넘겨주는 편법이 공공연히 자행돼 왔다. 정부가 편법을 조장 내지는 묵과하고 있는 단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략 프리미엄으로 1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돈다. 이러다 보니 실질적인 사슴수입자는 검역 계류장 사용을 지정 받고부터 본격적으로 수입을 추진하는 등 모순점이 도출된 것이다.

그래서 협회는 계류장 사용 지정 추첨제를 폐지하고 수입절차를 ①사슴수입 선(先) 계약 ②해당국의 매매계약서 서류 확인 ③검역 계류장 사용 서류 접수 ④접수순으로 사슴수입 추진 ⑤국립동물검역소 검역 ⑥출고하는 등의 과정을 갖추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러한 협회의 요구는 사슴수입을 보다 투명하고 적법하게 하여 편법을 없애라는 것이다. 오히려 현행 사슴수입 절차는 정부당국이 편법을 조장내지는 묵과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기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사슴수입이 자유화 되었다 하더라도 국내 양록업 보호지원에서 정부당국이 검역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이는 무역분쟁 소지를 없애면서 취할 수 있는 선진국 등의 추세이기도 하다.

국내에 수입되는 살아있는 동물중 사슴처럼 대량 들어오는 동물은 없다.

결국 정부당국의 의지만이 피폐해 가는 국내 양록업을 소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